

대구광역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급담당교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 대상 및 지급액)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1에 따라 학급담당교원에게 지급되는 가산금의 80퍼센트 이상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연구비용(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을 말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(지급일) 제2조에 따른 교육연구비용(이하 “담임교육연구비”라 한다)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른 수당 지급일로 한다.

제4조(지급 방법) 담임교육연구비의 지급 방법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른 수당의 지급 방법을 준용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